



Newsletter

Pillar Two – G7 Statement on Global Minimum Taxes

G7 성명서에 따른 미국 모기업 그룹(US parented Group)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면제 및 미국의 IRC Section 899 개정안(보복세) 삭제

2025 년 6 월 28 일 G7¹은 미국에 모기업을 둔 그룹(US Parented Group)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는 것에 합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합의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감세법안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세를 부과하는 IRC Section 899 개정안을 삭제하였습니다.

트럼프 감세법안,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IRC Section 889 개정안 (보복세) 주요 내용

- 지난 2025 년 5 월 22 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는 미국 기업 및 국민에게 불공정한 외국 세금(“Unfair Foreign Tax”)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Section 899, “보복세”)이 포함되었습니다.
- 해당 보복세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나,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중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처럼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 세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나 국민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최대 15%의 원천징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¹ G7: Group of Seven 의 약자로 국제 통화 기금이 분류한 세계의 7 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로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상 7 개국으로 구성

G7 합의 내용 및 성명서 주요 내용 요약

- 미국은 GILTI 규정² 등 자국세법 상 최저한세 규정과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이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이를 병행하여 적용하자는 ‘병행적용방안(side-by-side solution)’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모기업을 둔 그룹(US Parented Group)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중 소득납입규칙(IIR)과, 소득납입보완규칙(UTPR)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지난 6월 G7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여러 국가들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DMTT) 규정을 도입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과 미국 OBBBA 법안 내 보복세가 시행될 경우 국제 조세 체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G7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 G7 성명서에서 합의한 핵심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모기업 그룹의 미국 및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상 소득납입규칙(IIR), 소득납입보완규칙(UTPR) 적용 제외
 - 공정 경쟁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위험 발생 시 공동 대응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행정 및 신고 절차 단순화
 - 실질기반 비환급 세액공제(substance-based non-refundable tax credits)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
- G7 성명서에서는 해당 병행적용방안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수용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OECD의 BEPS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는 해당 성명서를 기반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세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수주 내에 세부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세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US Parented Group의 범위
 - 실질기반 비환급 세액공제의 범위와 계산 방식
 - 영구적적용면제(Permanent Safeharbour)를 염두해 둔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신고절차 단순화의 구체적 내용
 -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등
- 한편, 미국은 G7 합의 직후 OBBBA 법안 내 IRC Section 899의 보복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실제 7월 1일 상원을 통과한 OBBBA 수정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² 미국 GILTI 제도: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의 약자로 미국 모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소득 중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차감한 초과이익에 대해 저율로 과세시 미국 모기업이 미국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제도.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납입규칙과 유사하나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등 차이점 존재

KPMG Observations

- G7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자국세법 상 GILTI 규정 등을 보완하여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한편, 미국과 OECD 간의 합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미국 세법 상 규정이 병행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가 도입한 소득산입규칙(IIR)과 EU, 영국, 베트남 등 해외자회사 소재 국가에서 시행중인 적격소재국추가세과세제도 (QDMTT) 규정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결산 반영 및 신고 준비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G7 합의 내용 중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행정 절차 및 신고 절차 단순화, 그리고 실질기반 비환급 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OECD 에서 발표할 세부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Global Tax Team – Key Contacts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Baik, Chun Wook	cbaik2@kr.kpmg.com	02-2112-3339
Kim, Ji Yeon	jiyeongkim@kr.kpmg.com	02-2112-0167
Jung, Hye Won	hjung2@kr.kpmg.com	02-2112-7572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